

# 지재권 다시보기

오픈넷 아카데미(4기) 제3강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2015. 3. 12.

# 01 지재권 - 개요

## 창작에 관한 권리

- 특허, 실용신안
- 저작권
- 디자인권
- 식물신品种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 창작과 무관한 권리

- 상표
- 지리적 표시
- 영업비밀
- 의약품/농약의 시판허가를 위한 자료

## 상표

-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 (mark)
- 회사 명칭(Apple, 삼성전자), 제품 이름(iPhone, Galaxy)
- 문자, 입체, 색채, 소리, 냄새
- 상표 보호의 근거
  - 정보비용
  - 출처 표시, 품질 보증

# iPhone

## ▶ 지정상품

번호	상품코드	유사군코드	지정상품(영문)
1	16	G5206	매뉴얼 (디지털모바일기기/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하드웨어/소비자전자기기/디지털기술/전화기/통신기기/사진/온라인소매/엔터테인먼트/음악/영화/비디오/멀티미디어기기 관련한 것임 - manuals relating to digital mobile devices, computer software, computer hardware, consumer electronics, digital technology, telephones and telecommunications, photography, on-line retailing, entertainment, music, movies and video, and multimedia apparatus and instruments)
2	16	G2202	메모패드 (memo pads)
3	16	G2202	바인더 (binders)
4	16	G5206	브로슈어 (디지털모바일기기/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하드웨어/소비자전자기기/디지털기술/전화기/통신기기/사진/온라인소매/엔터테인먼트/음악/영화/비디오/멀티미디어기기 관련한 것임 - brochures relating to digital mobile devices, computer software, computer hardware, consumer electronics, digital technology, telephones and telecommunications, photography, on-line retailing, entertainment, music, movies and video, and multimedia apparatus and instruments)

등록 [1] (상표명 정보 없음)



소리상표

상품분류: 09

출원(국제등록)번호: 4020120033936

등록번호: 4010212020000

공고번호: 4020130103702

도형코드: 980100

출원인: 인텔 코모퍼레이션

출원(국제등록)일자: 2012.05.25

등록일자: 2014.02.05

공고일자: 2013.11.04

대리인: 조태연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내림라 장조(D $\flat$  major)의 4/4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D $\flat$ , D $\flat$ , G $\flat$ , D $\flat$ , A $\flat$ 으로 이루어진 음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마디에서는 D $\flat$ 이 4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된 후 각각 1박(4분쉼표) 및 1/2박(8분쉼표)의 길이로 쉬고, 다시 D $\flat$ 이 8분음표의 길이로 연주되고, 이어 G $\flat$ 과 D $\flat$ 이 각각의 8분음표 길이로 연주되며, 두번째 마디는 A $\flat$ 이 온음표의 길이로 연주되는 것을 그 구성으로 합니다.

## 냄새상표

- 출원인: 히사미쓰 세이야꾸 가부시키가이샤
- 공고번호 40-2013-0118210
- 지정상품: 소염진통패치
- 상표에 대한 설명: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냄새견본과 같이, 고농축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10wt%)과 멘톨(menthol 3wt%)의 혼합물에 의한 민트향으로 구성된다.

## 웹하드 WebHard

상세정보

통합행정정보

**서지정보**

인명정보 도형분류(비엔나)코드 행정처리 상표설명/지정상품

(511) 상품분류 35분류(7판) 38분류(7판)

크게보기 

(220) 출원번호(일자) 4120000002791(2000.02.09)

(731)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111) 등록번호(일자)

(260) 공고번호(일자)

(641) 원출원번호(일자)

(300) 우선권주장번호(일자)

관련출원번호 4120010010457

등록상태 거절

최종처분(일자) 거절결정(일반)(2001.08.31)

소급구분(일자) (2000.02.09)

심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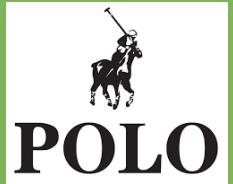
구분 국내상표, 복합문자, 일반

**WebHard**  
**웹하드**



**Webhard** → 특허심판원 2003원606 심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서비스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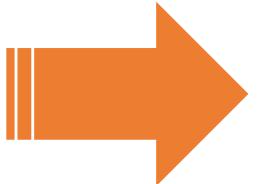
**Linux**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후3401 판결 :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



v. Pola : 대법원 96후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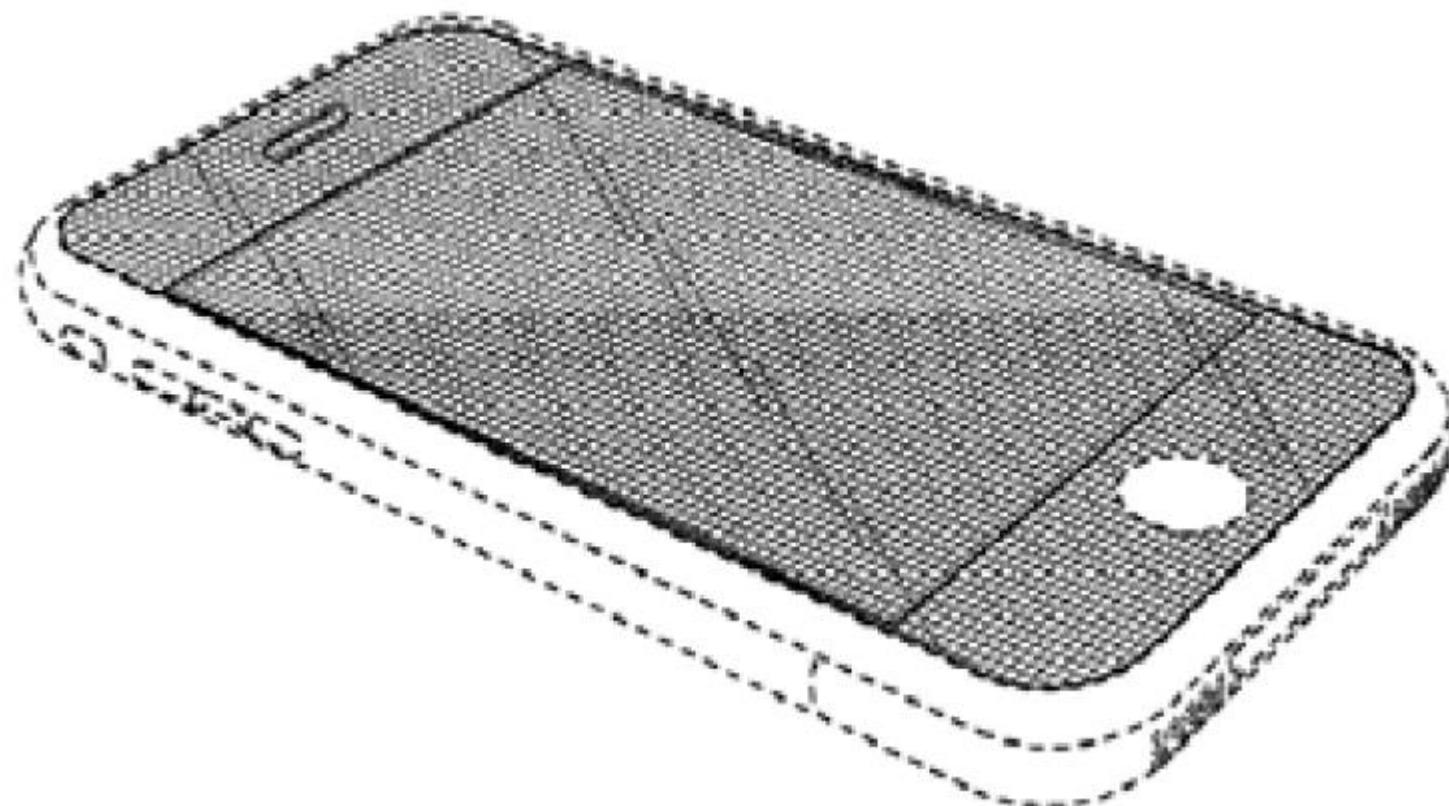
v. Rolens : 대법원 95후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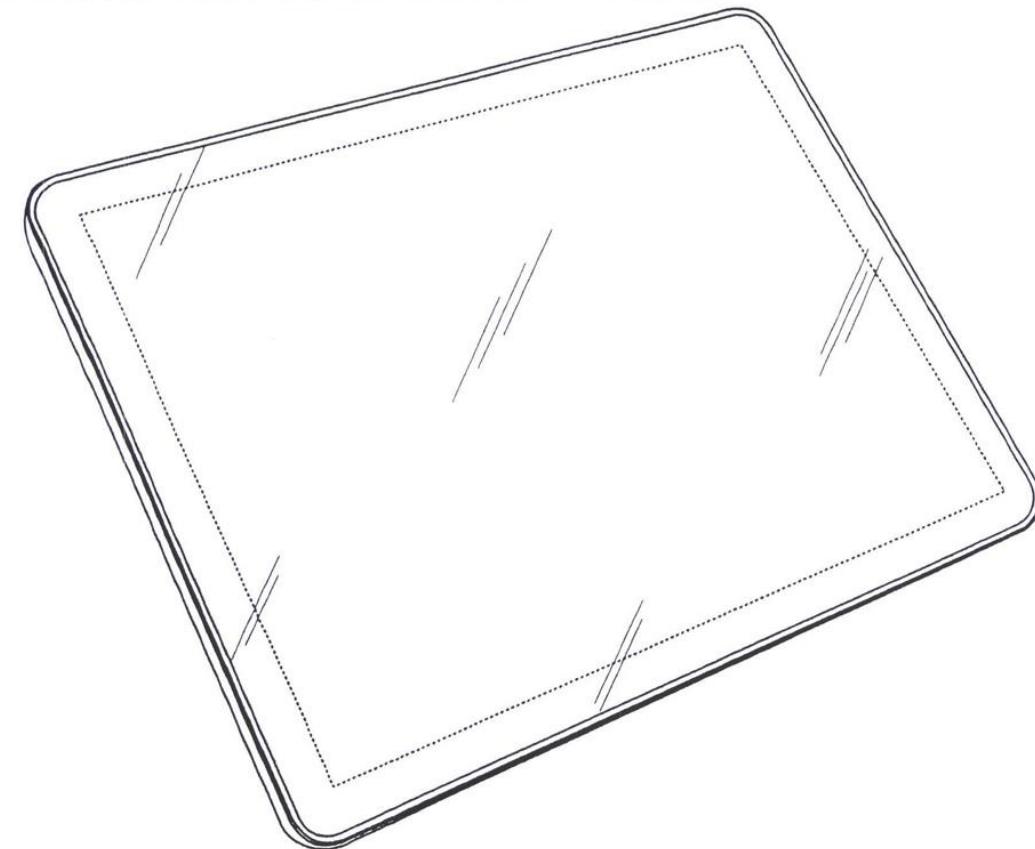
장례용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삼족오문양  
지정상품: 장례용품 등

## 디자인



## 디자인



디자인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09년09월03일  
(11) 등록번호 30-0538666  
(24) 등록일자 2009년08월27일

- (52) 분류 H3-301S무심사등록  
(51) 국제분류 14-04  
(21) 출원번호 30-2008-0038477  
(22) 출원일자 2008년09월04일

## (73) 등록권자

애플 인크.

미합중국, 95014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인피니트 루프 1

## (54)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 M0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 등임.
-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 본 디자인 물품은 MP3 Player, 카메라, 동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임.
- 본 디자인에서 정보전달 또는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하여 물품에 표시된 문자(날짜, 시간 등), 표지, 상표, 로고 등은 디자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단면은 생략하였음.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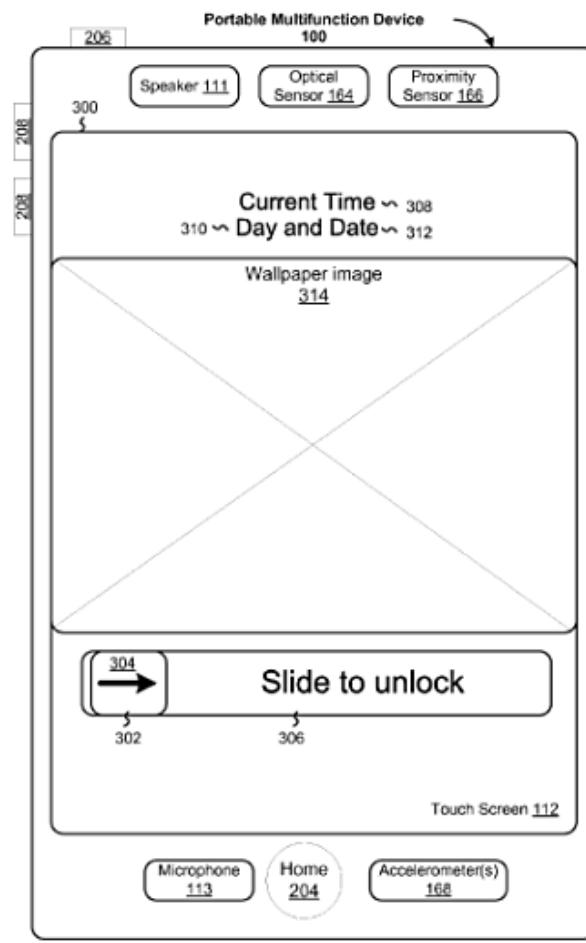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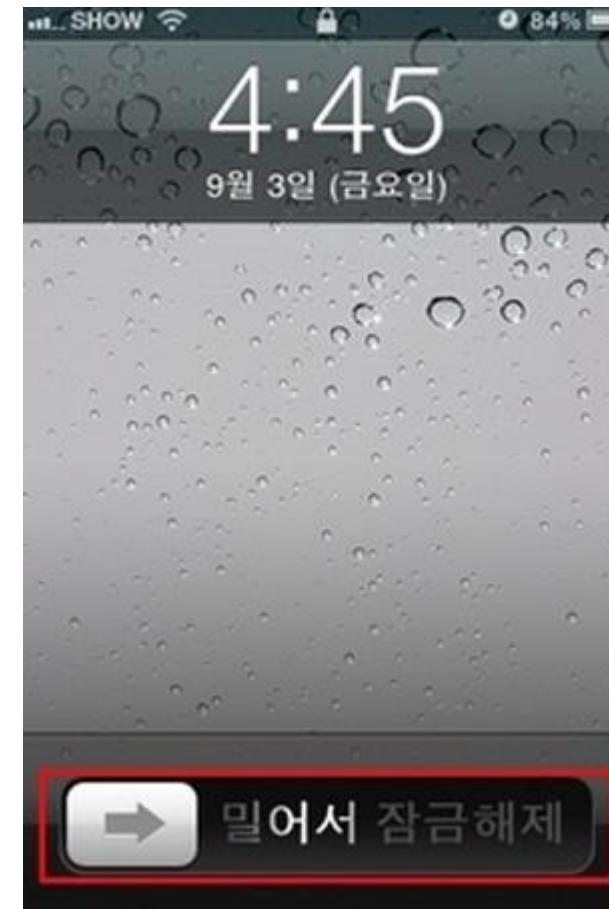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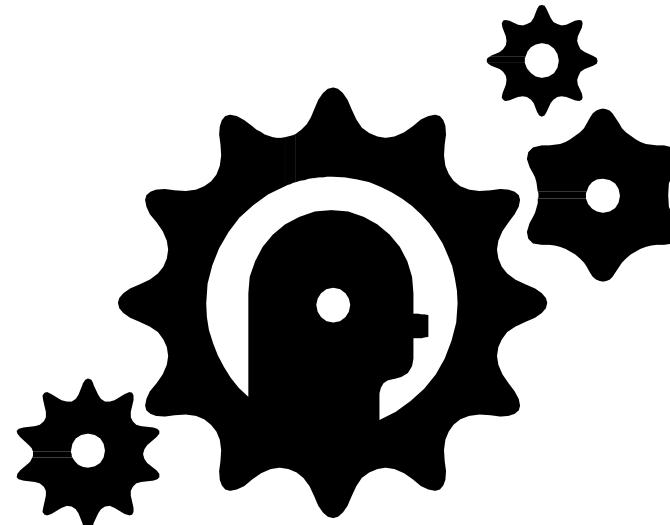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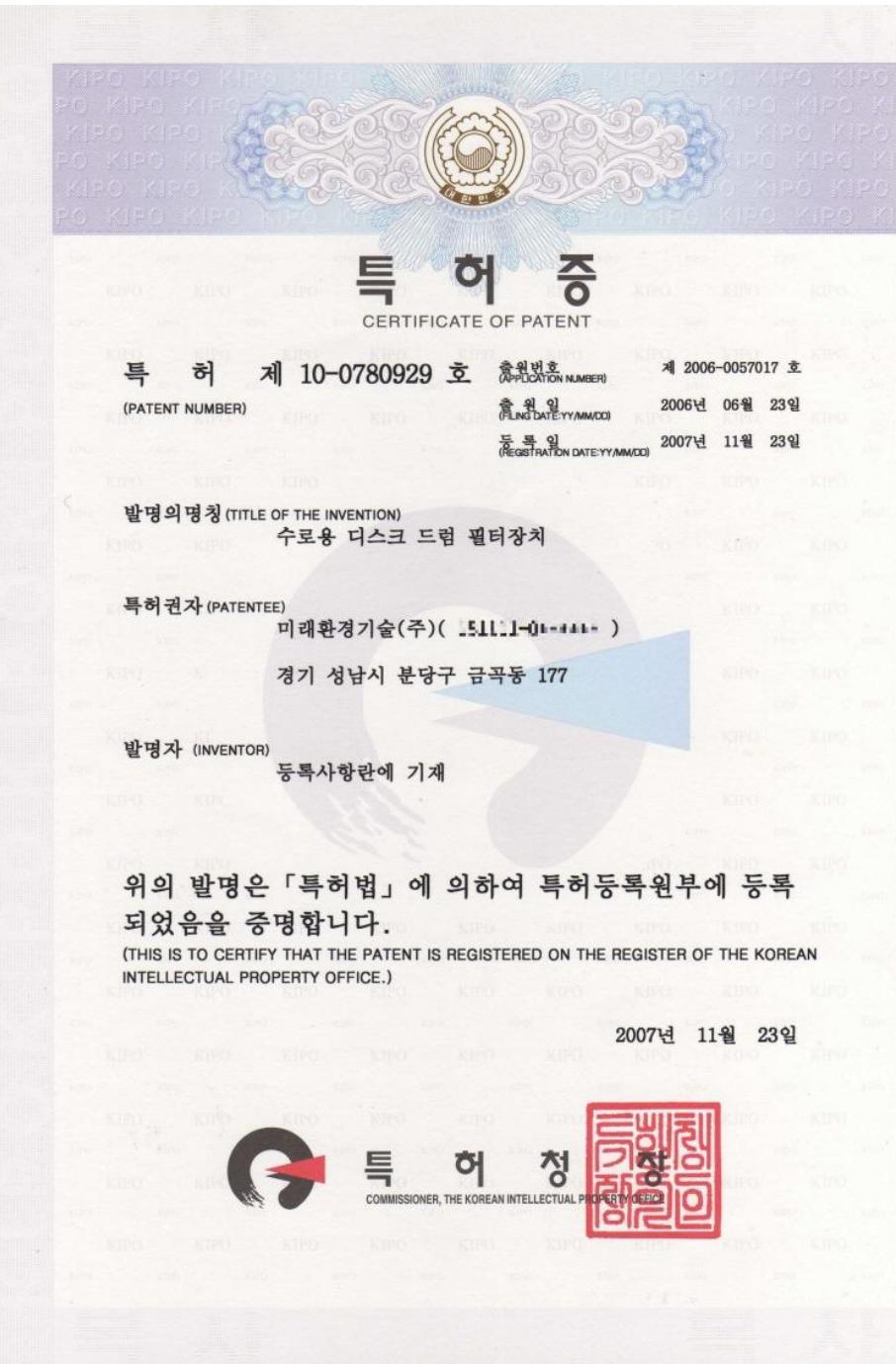
Figure 3



## 특허



방법  
공정  
새로운 용도



특허 등록번호		10-0261366-0000					
권리란							
표시번호	사항						
1번	출원 연월일 : 1993년 04월 03일 우선권주장일자 : 1992년 04월 03일 우선권 주장국 : 스위스 공고 연월일 : 2002년 07월 18일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00년 01월 26일 유별 : C07D 239/42 발명의 명칭 : 파리미딘유도체, 이의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조성을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3년 06월 03일	출원 번호 : 10-1993-0005628 우선권 주장수 : 1  공고 번호 : 청구범위의 항수 : 0					
				2000년 04월 18일 등록			
2번	<b>(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b> 연장등록출원연월일 : 2001년 09월 20일 연장등록결정연월일 : 2001년 12월 28일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 특허 제026136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연장기간 : 2월 협약 또는 등록의 내용 : 약사법 제34조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연장등록출원번호 : 10-2001-0058428 연장대상청구항수 : 8					
				2001년 12월 28일 등록			
특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1번	<b>(등록권리자)</b> 노바티스 아게 스위스 **** 바젤 슈바르츠발달레 ***						
				2000년 04월 18일 등록			

※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소 일부는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는 일부(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부기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료란				
제 01 ~ 03년분	금액	702,000 원	2000년 04월 19일	납입
제 04 ~ 04년분	금액	371,000 원	2003년 03월 26일	납입
제 05 ~ 05년분	금액	335,000 원	2004년 04월 08일	납입
제 06 ~ 06년분	금액	335,000 원	2005년 03월 04일	납입
제 07 ~ 07년분	금액	593,000 원	2006년 03월 15일	납입
제 08 ~ 08년분	금액	560,000 원	2007년 04월 11일	납입
제 09 ~ 09년분	금액	532,000 원	2008년 04월 11일	납입
제 10 ~ 10년분	금액	845,000 원	2009년 04월 10일	납입
제 11 ~ 11년분	금액	845,000 원	2010년 04월 13일	납입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 Int. Cl. <sup>7</sup>  
 C07D 239/42  
 A61K 31/505

(45) 공고일자 2002년07월18일  
 (11) 등록번호 10-0261366  
 (24) 등록일자 2000년04월18일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10-1993-0005628  
 1993년04월03일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1993-0021624  
 1993년11월22일

(30) 우선권주장

01083/92-1

1992년04월03일

스위스(CH)

(73) 특허권자

노바티스 아게  
 더블류. 하링, 지. 보이를  
 스위스 4058 바젤 슈바르츠발달레 215

(72) 발명자

위르그침 머만  
 스위스연방4313뫼흘린바이덴파르크1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장진아

(54) 피리미딘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조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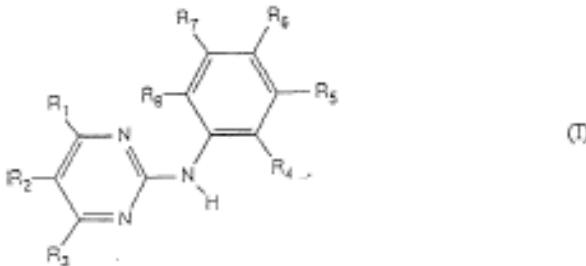
**요약**

일반식(I)의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 및 하나 이상의 염-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식(I)의 N-페닐-2-파리미딘-아민 유도체 또는 하나 이상의 임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임.



상기 식에서,

$\text{R}_1$ 은 4-페라지닐, 1-메틸-1H-파롤릴, 아미노- 또는 아미노-제글 알킬 치환된 페닐(여기서, 아미노 그룹은 각각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5원 환 탄소원자에 결합된 1H-인돌릴 또는 1H-이미다졸릴, 또는 환 탄소원자에 결합되고 질소원자가 산소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치환되지 않거나 제글 알킬 치환된 파리딜이고,

$\text{R}_2$  및  $\text{R}_3$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제글 알킬이며,

라디칼  $\text{R}_4$ ,  $\text{R}_5$ ,  $\text{R}_6$ ,  $\text{R}_7$  및  $\text{R}_8$ 에 있어서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두개는 각각 니트로; 플루오로 치환된 제글 알콕시 또는 일반식  $-\text{N}(\text{R}_9)-\text{C}(=\text{X})-(\text{Y})_n-\text{R}_{10}$  (11)의 라디칼 (여기서,  $\text{R}_9$ 는 수소 또는 제글 알킬이고, X는 옥소, 티오, 이미노, N-제글 알킬-이미노, 하이드록시이미노 또는 0-제글 알킬-하이드록시이미노이며, Y는 산소 또는 그룹 NH이고, n은 0 또는 1이며,  $\text{R}_{10}$ 은 탄소수 5 이상의 지방족 라디칼, 또는 방향족, 방향족-지방족, 지방족, 지방족-지방족,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지방족 라디칼이다)이고, 나머지 라디칼  $\text{R}_4$ ,  $\text{R}_5$ ,  $\text{R}_6$ ,  $\text{R}_7$  및  $\text{R}_8$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유리되거나 알킬화된 아미노, 파페라지닐, 파페리디닐, 파몰리디닐 또는 모르풀리닐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제글 알킬; 제글 알카노일; 트리플루오로메틸; 유리되거나 에테르화되거나 에스테르화된 하이드록시;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아미노; 또는 유리되거나 에스테르화된 가복시이다.

## 특허

###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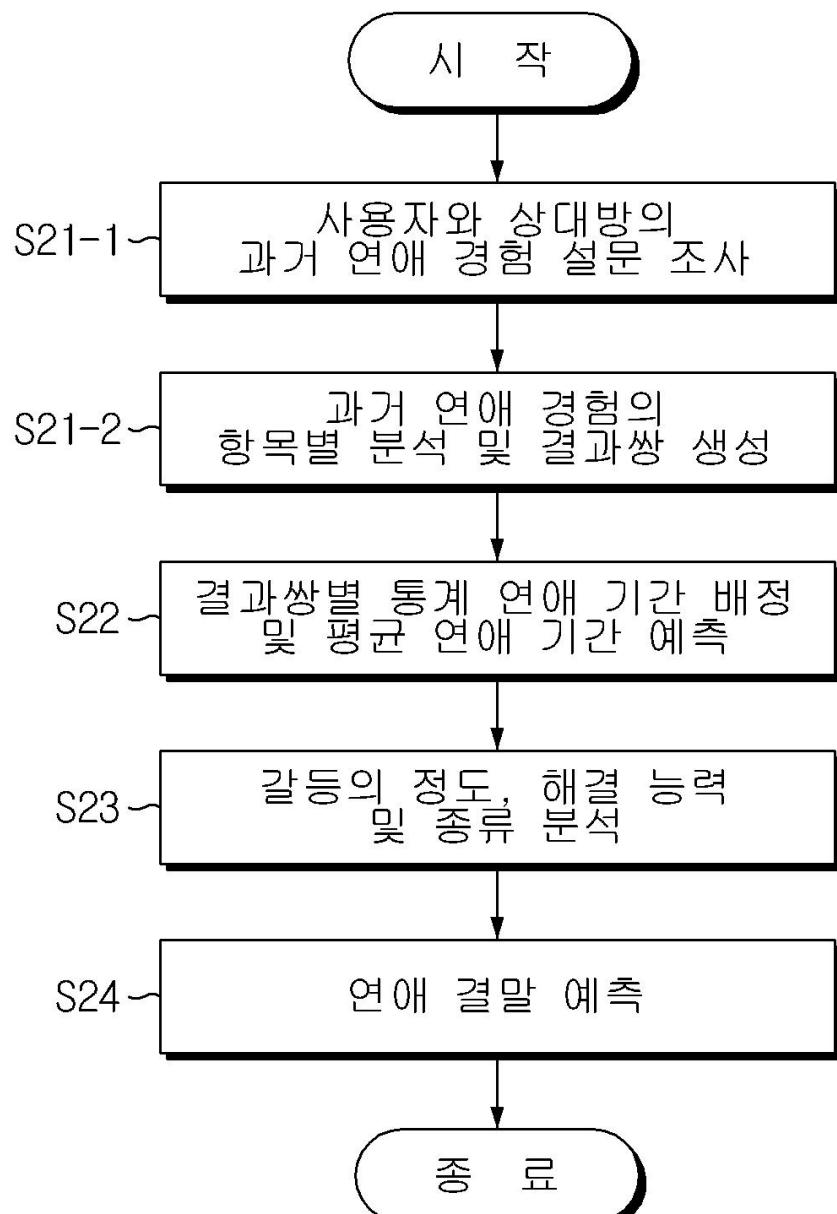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제66조(특허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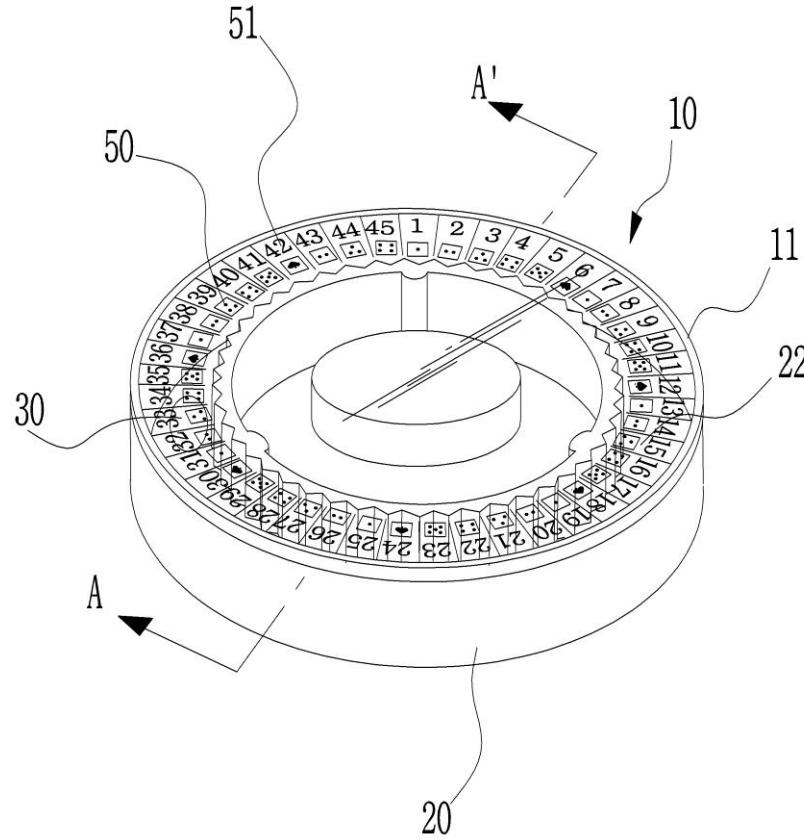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 등록 제1247670호  
과거 연애 경험을 이용한 연애 예측 시스템 및 연애  
예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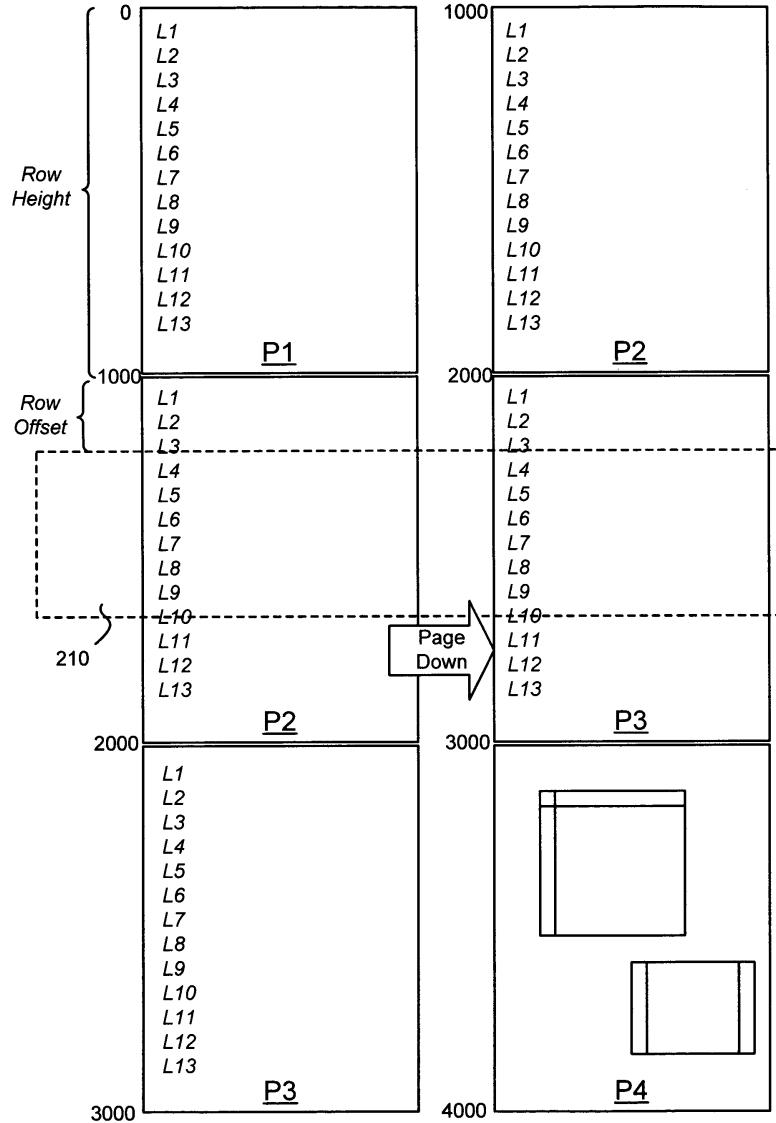
본 발명은 사용자와 상대방의 과거 연애 경험을 이용하여 연애 결말을 예측하는 연애 예측 시스템 및 연애 예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연애 예측 시스템은, 사용자와 상대방의 과거 연애 경험을 연애 유형 항목별로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매칭시키는 연애 유형 분석 모듈; 분석된 상기 연애 유형 항목의 매칭 결과에 대하여 대응하는 통계 연애 기간을 배정하여 사용자의 연애 기간을 예측하는 연애 기간 예측 모듈; 연애 유형의 매칭 결과와 함께 사용자와 상대방의 갈등 정도를 분석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연애 갈등 예측 모듈; 및 사용자와 상대방의 경제 능력, 연애 기간 및 갈등 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결혼 여부의 연애 결말을 예측하는 연애 결말 예측 모듈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대방과의 예측된 연애 기간, 갈등 정보 및 연애 결말을 참조하여 결말 지향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 2004113680000 로또번호추출기



요약: 본 고안은 상부면에 1~45의 번호와 그 하단에 게임부호를 분할하여 각각 인쇄한 투명재 원판의 하부에 결합테두리와 결합구를 갖는 상판과, 상판의 결합테두리와 결합구가 결합되도록 결합홈과 결합홈의 외측에 볼이 회전가능하도록 안내홈을 형성한 하판과 그 하판의 하부에 자석과 오프너와 키고리를 부설형성하여 로또번호 추출 및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및 점포의 판촉용으로 제공되는 로또번호추출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상부 외주면둘레에 1~45의 번호와 그 하부에 게임부호를 분할면에 각각 인쇄된 투명재 원판(11)과, 상기 원판(11)의 하부 중앙에 형성한 결합구(12)와 상기 결합구(12)의 외주연에서 소정거리를 두고 결합테두리(13)를 형성한 상판(10)과; 상기 상판(10)의 상기 결합구(12)가 결합되도록 중앙에 형성하고, 외측둘레에 톱니모양의 다수개의 볼자리(23)를 각각 형성한 원형의 결합홈(21)과, 상기 결합테두리(13)가 안착되도록 상기 결합홈(21)의 외측둘레에 안내홈(22)을 더 형성한 하판(20)과; 상기 안내홈(22)내에서 회전하도록 형성한 볼(30)과; 상기 하판(20)의 하부중앙에 형성된 삽입홈(41)에 삽입된자석(40)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또번호추출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US Patent No: 7,415,666**  
**Method and system for navigating paginated content in page-based increments**

A method and system in a document viewer for scrolling a substantially exact increment in a document, such as one p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zoom is such that some, all or one page is currently being viewed. In one implementation, pressing a Page Down or Page Up keyboard key/button allows a user to begin at any starting vertical location within a page, and navigate to that same location on the next or previous page. For example, if a user is viewing a page starting in a viewing area from the middle of that page and ending at the bottom, a Page Down command will cause the next page to be shown in the viewing area starting at the middle of the next page and ending at the bottom of the next page. Similar behavior occurs when there is more than one column of pages being displayed in a row.

# 사상 감정의 표현

## 저작권

- 문학작품: 시, 소설, 수필 등
- 학술: 논문
- 영상저작물: 영화, TV 드라마, 동영상
- 음악저작물: 작곡, 작사, 음반, 연주, 공연
- 연극: 연극, 무예, 뮤지컬, 안무
-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각, 공예
- 사진
- 도형: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 건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 신문기사, 블로그, 트윗, 페이스북

# 저작권 보호대상 (1)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속에 든 맥주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상품판매전략 아이디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문안 제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 보호대상 (2)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 저작권 보호대상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권 보호대상 (4)



# 저작권 보호대상 (5)

판매용 음반?



LIVE MUSIC FROM NEW &  
UP-AND-COMING ARTISTES



# 저작권 침해

## ○ 지분권

- 저작재산권: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 ○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ISP)

## ○ 기술적보호조치, 암호화된 방송신호, 위조 라벨, 캠코더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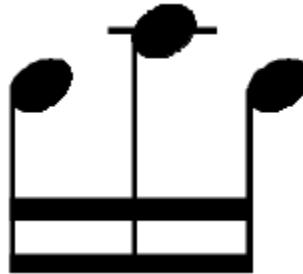
## ○ 제한과 예외: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제한(재판절차에서의 복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교육 목적, 도서관, 시사보도, 인용, 비영리 공연, 사적 이용 복제, 시험문제, 시각장애인, 미술저작물의 전시, 일시적 복제 등)

# 저작권 침해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저작권 침해



## 블로그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

### 저작권법개정법률안

2004년 9월23일 국회 통과, 2004년 10월 16일 공포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제7233호, 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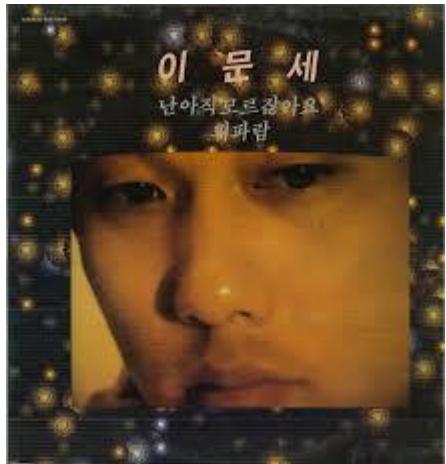


광고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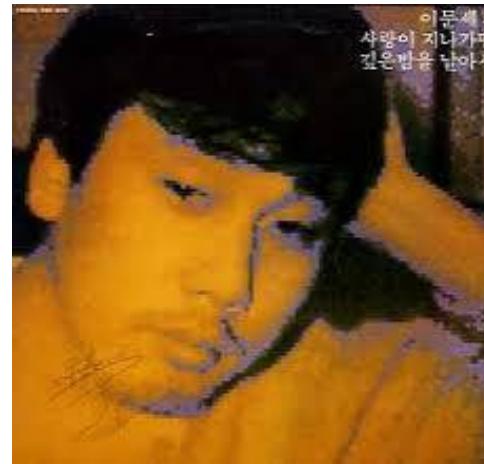
###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 “미술저작물등” =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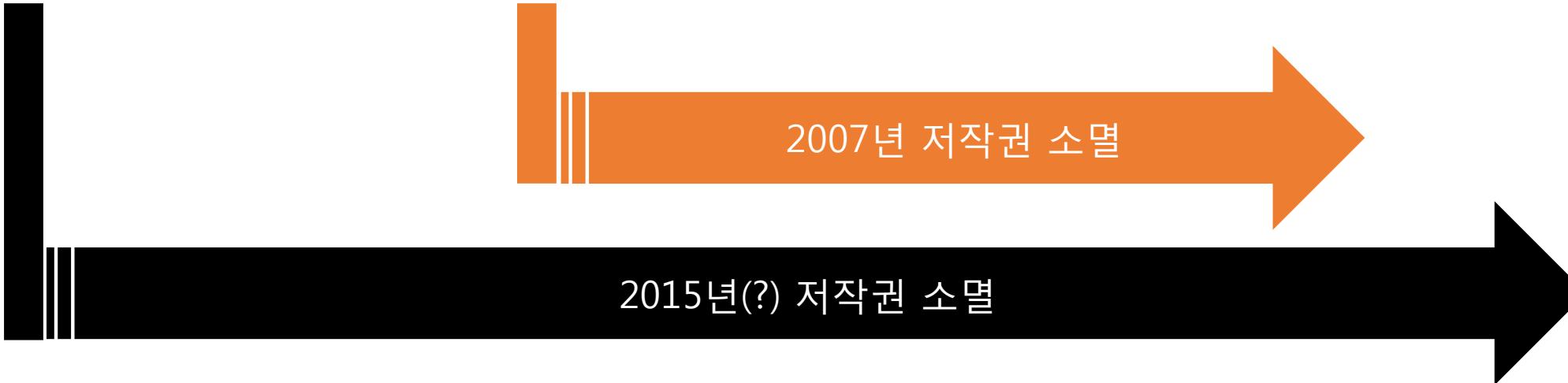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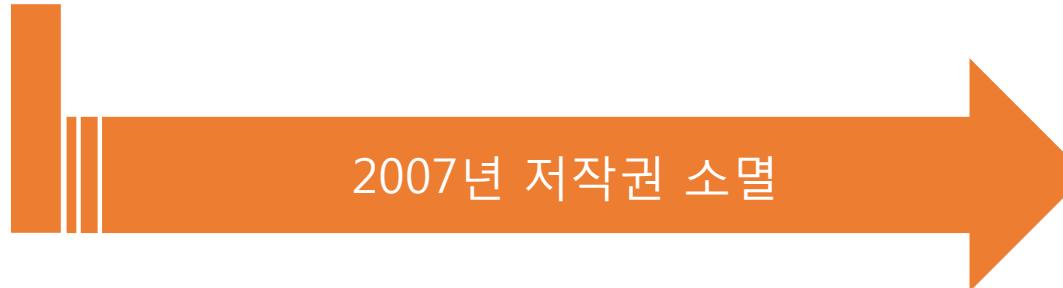


이문세 3집  
발매일: 1985년  
타이틀: 난 아직 모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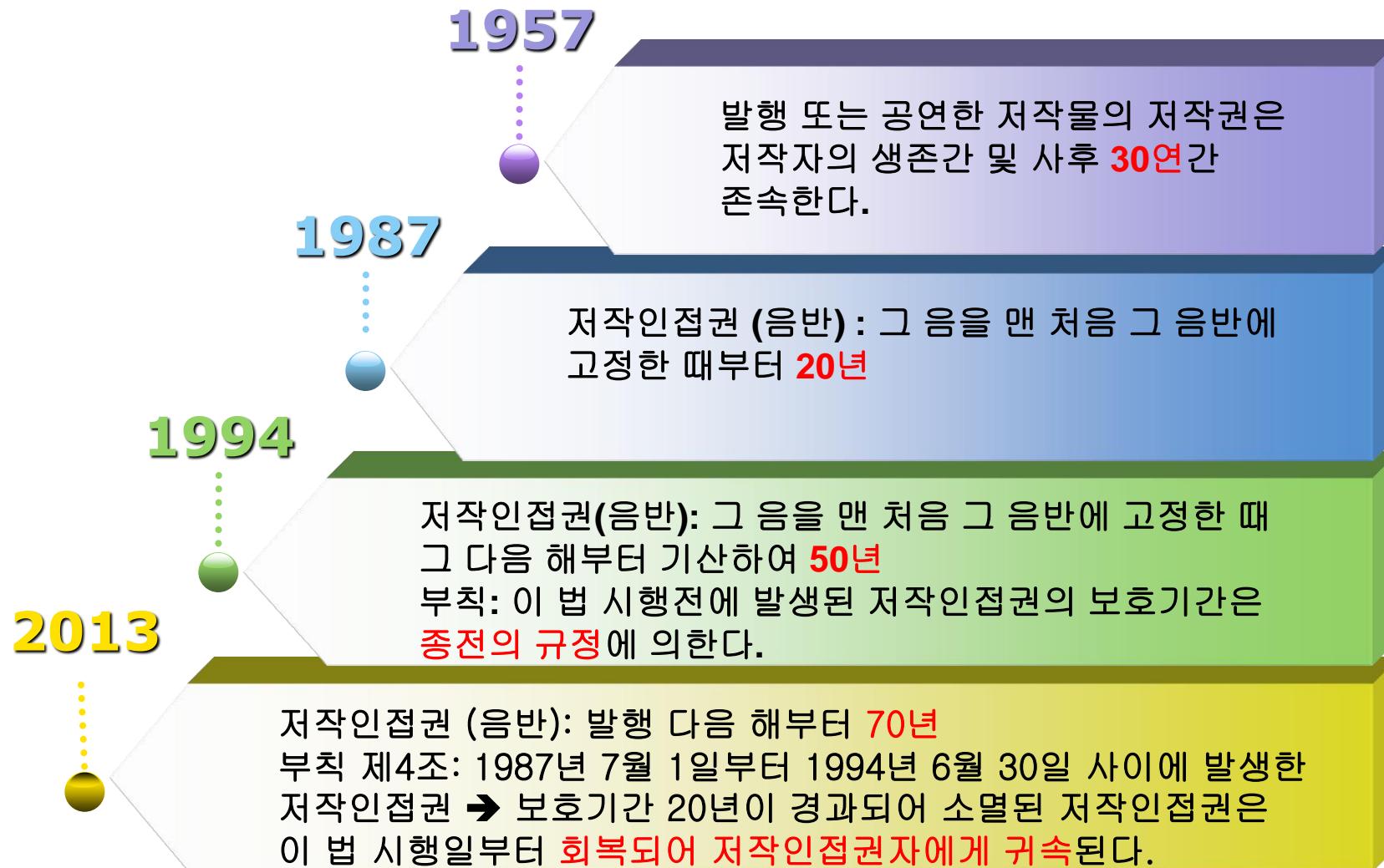


이문세 4집  
발매일: 1987년  
타이틀: 사랑이 지나가면

?



# 음반 저작권 보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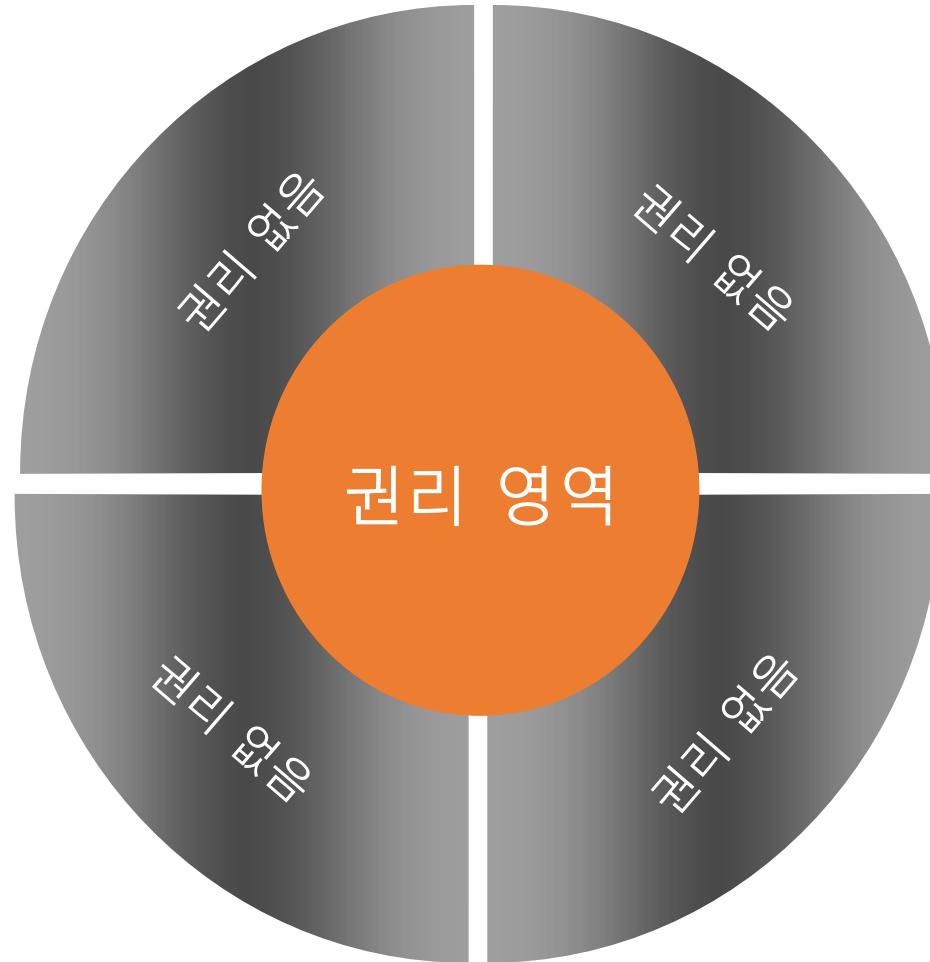
## 02 지재권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규범의 준수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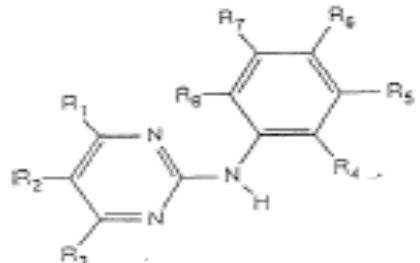
# 지적재산권이 어려운 이유

지적재산 **권**



### 청구항 1.

일반식(I)의 N-페닐-2-파리미딘-아민 유도체 또는 하나 이상의 염 형성 그룹을 포함하는 이의 염.



Q1

## 특허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상기 식에서,

$R_1$ 은 4-페라지닐, 1-메틸-1H-페롤릴, 아미노- 또는 아미노-겨급 알킬 치환된 폐닐(여기서, 아미노 그룹은 각각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5원 환 탄소원자에 결합된 1H-인돌릴 또는 1H-이미다졸릴, 또는 환 탄소원자에 결합되고 질소원자가 산소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치환되지 않거나 겨급 알킬 치환된 폐리딜이고.

$R_2$  및  $R_3$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며,

라디칼  $R_4$ ,  $R_5$ ,  $R_6$ ,  $R_7$  및  $R_8$ 에 있어서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두개는 각각 니트로; 플루오로 치환된 저급 알콕시 또는 일반식  $-N(R_9)-C(=X)-(Y)_n-R_{10}$  (11)의 라디칼 (여기서,  $R_9$ 는 수소 또는 저급 알킬이고, X는 옥소, 티오, 이미노, N-저급 알킬-이미노, 하이드록시이미노 또는 0-저급 알킬-하이드록시이미노이며, Y는 산소 또는 그룹 NH이고, n은 0 또는 1이며,  $R_{10}$ 은 탄소수 5 이상의 지방족 라디칼, 또는 방향족, 방향족-지방족, 지환족, 지환족-지방족,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지방족 라디칼이다)이고, 나머지 라디칼  $R_4$ ,  $R_5$ ,  $R_6$ ,  $R_7$  및  $R_8$ 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유리되거나 알킬화된 아미노, 폐페라지닐, 폐페리디닐, 폐클리디닐 또는 모르플리닐에 의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저급 알킬; 저급 알카노일; 트리플루오로메틸; 유리되거나 에테르화되거나 에스테르화된 하이드록시; 유리되거나 알킬화되거나 아실화된 아미노; 또는 유리되거나 에스테르화된 가복시이다.



U.S. Patent 8,046,721

Claim 1. A method of unlocking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device including a touch-sensitive display, the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ontact with the touch-sensitive display at a first predefined location corresponding to an unlock image; continuously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the contact whil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is maintained, wherein the unlock image is a graphical, interactive user-interface object with which a user interacts in order to unlock the device; and unlocking the hand-held electronic device if the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results in movement of the unlock image from the first predefined location to a predefined unlock reg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 불확정 개념

특허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저작권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상표

혼동적 유사성 (Confusingly Similarity)

# 혁신과 창작

보상 無 → 혁신과 창작 無



- ◆ 배제성(Excludability): 타인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
- ◆ 경합성(rivality):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와 경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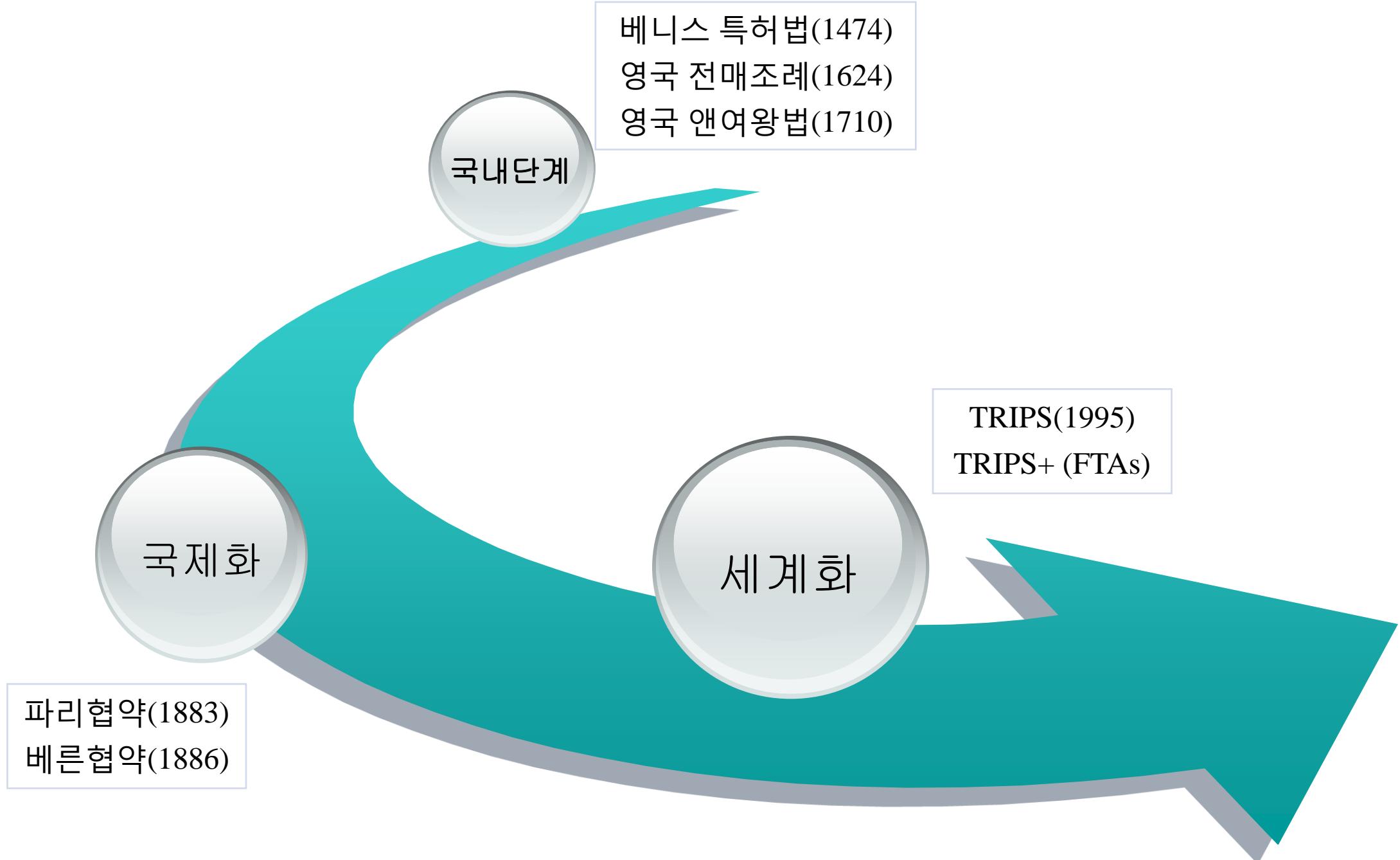
# 혁신과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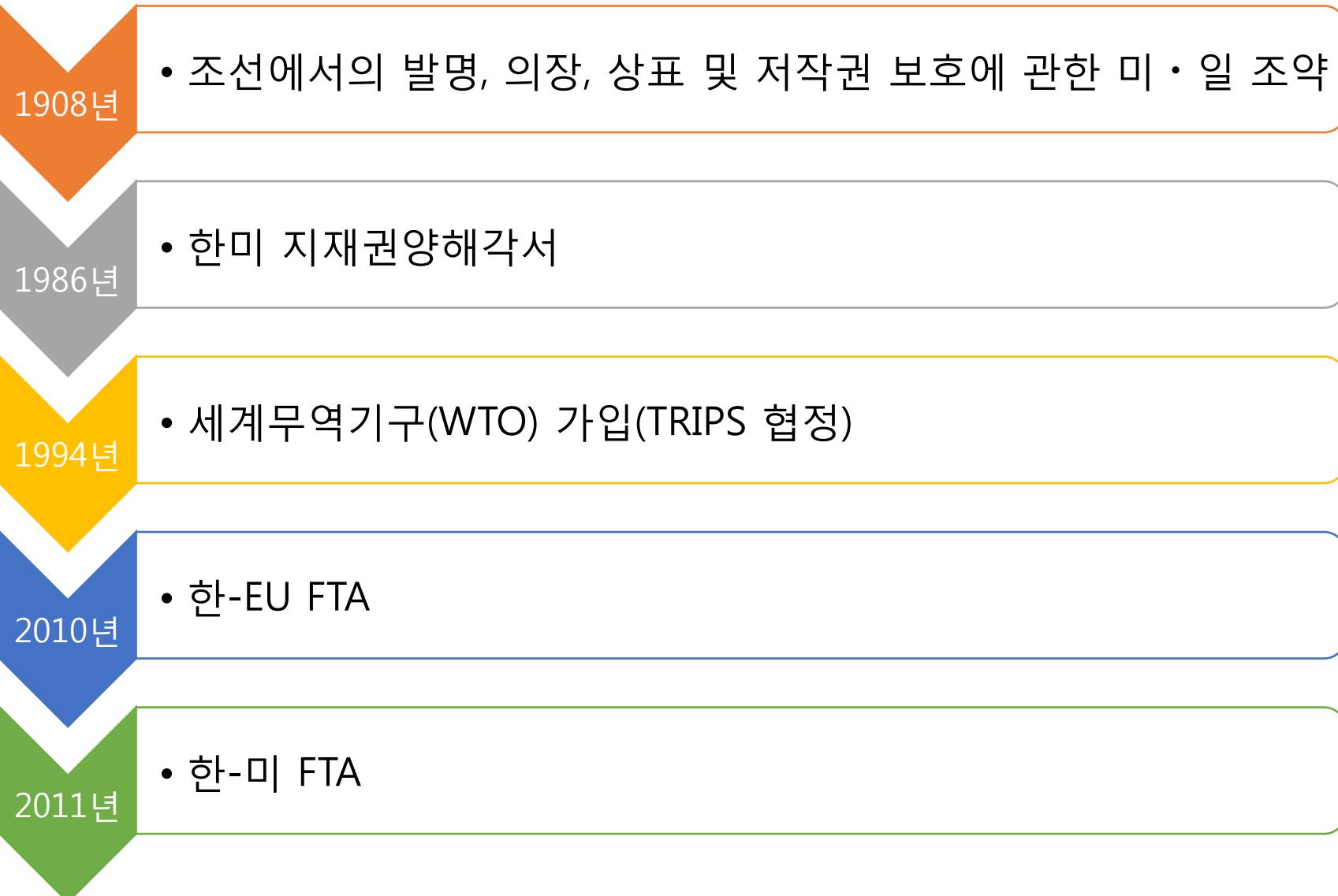
## ○ 보상-처벌 모델

### ○ 보상

- 지재권 = 타인을 배제할 권리
- 공공재 → 소비재
- 시장가격 → 경제적 보상을 통한 창작의 장려
- “비공유지의 비극” 또는 “사유지의 비극”
- 분배정의에는 무관심 → 사회적 이용 저해

### ○ 처벌: 리바이어던 방식(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1908년

-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일 조약

1986년

- 한미 지재권양해각서

1994년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TRIPS 협정)

2010년

-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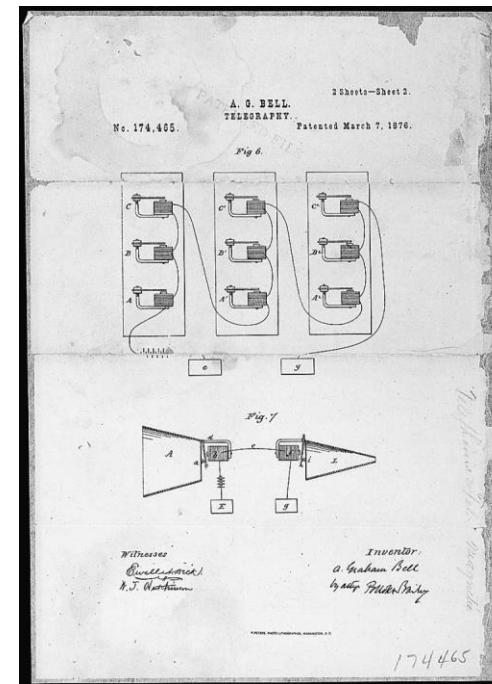
2011년

- 한-미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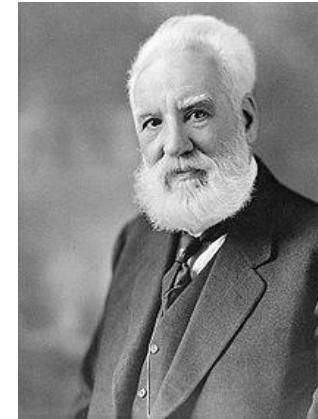
# 특허 제도의 문제점

# 독자 개발자 = 모방자

Elisha  
Gray



Alexander  
Graham Bell



## 발명의 집중 현상

전화기: Bell, Gray

전구: Edison, Swan

집적회로: Kilby, Noyce

전신: Morse, Henry, Cooke, Wheatstone

망원경: Hans Lippershey, Drebbel, Fontana, Jansen, Metius, Galileo)

비행기: Wrights, Glenn Curtis

레이저

플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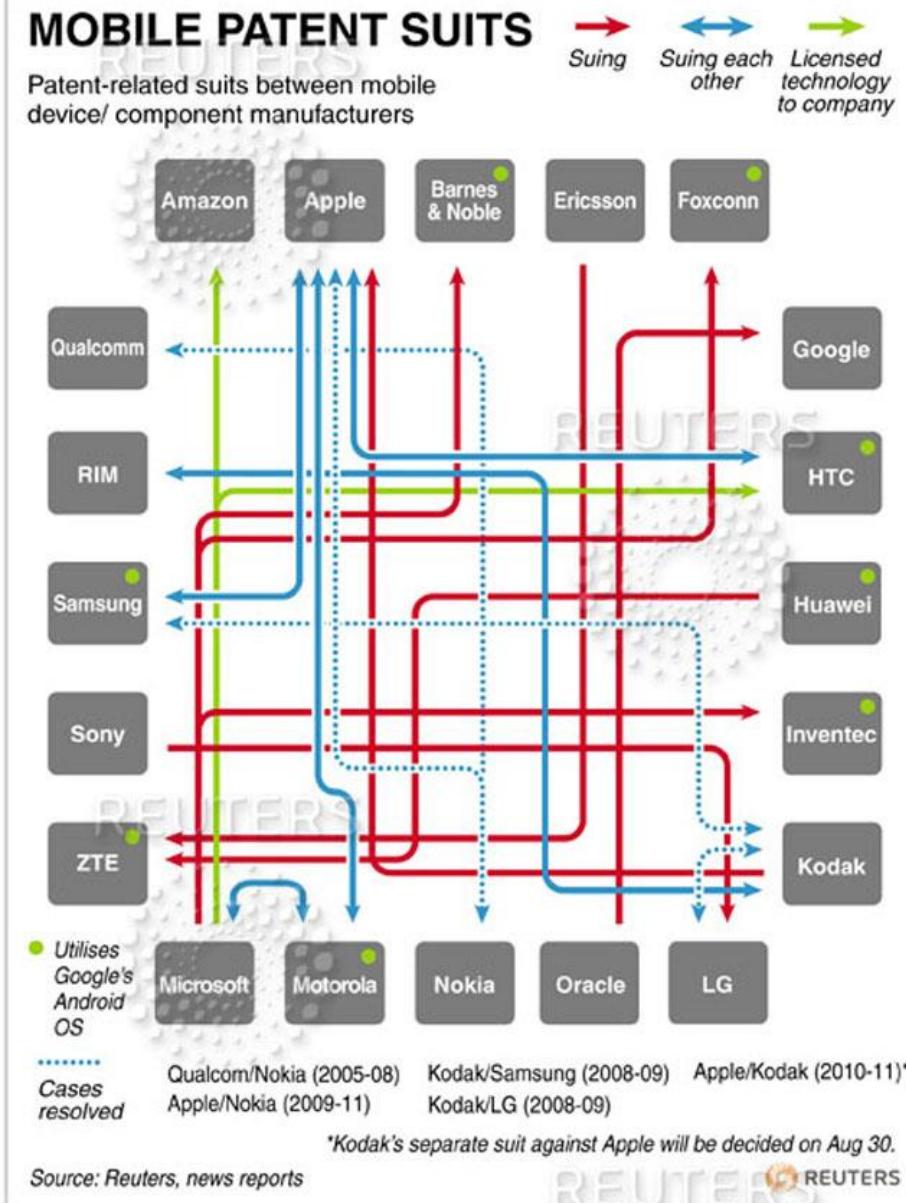




Based on our research, we believe there  
are more than **250,000 active patents**  
relevant to today's smartphones

# THE Patent W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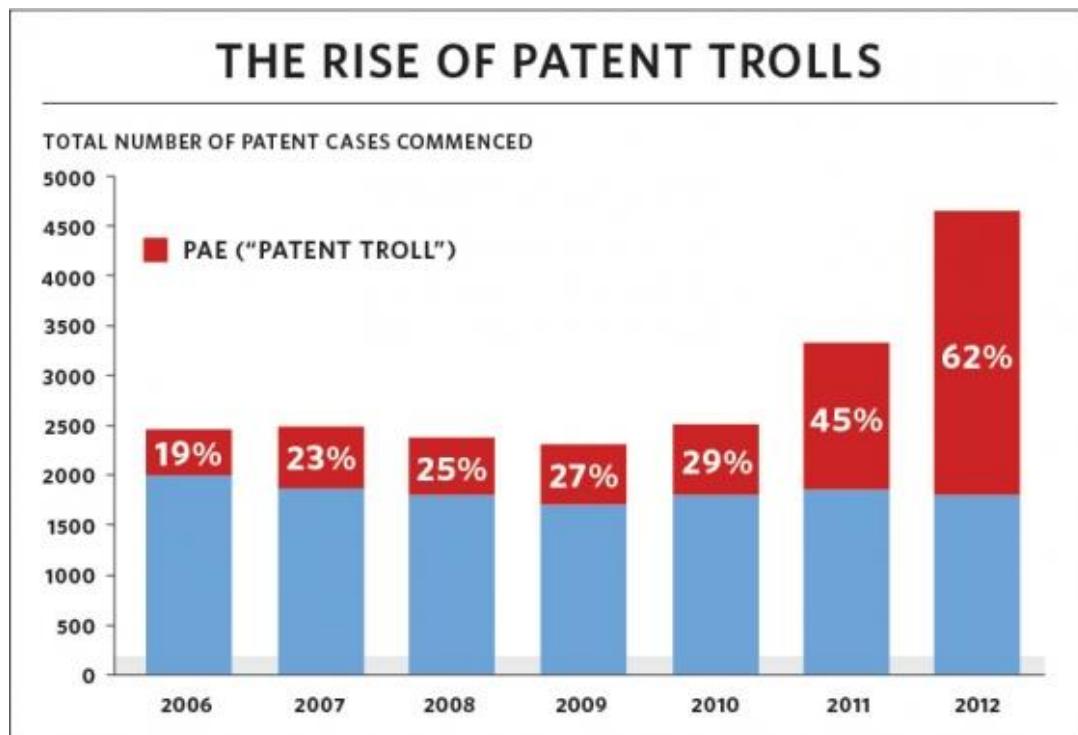
THE CONVOLUTED BATTLEFIELD OF TECH IP.



# 특허괴물 (1)

## 특허 괴물

- 특허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노리고 특허침해 소송을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자
- NPE (Non-Practicing Entity) – 비실시기업, 특허관리전문회사
- Patent Assertion Entity



##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James E. Bessen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Research on Innovation

Michael J. Meurer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June 28, 2012

NPE 소송 대응 비용  
2011년에만 290억 달러

# 특허고물 (2)

**로드시스(Lodsys)** - 앱 내에서 다른 제품의 판매가 일어나면 특허권(제7,620,565호) 침해 주장 → 트윗 어플 트윗트리픽(Twitterrific)

**네트워크 스캐너**로 문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 → 특허권 침해 주장, 침해사 직원 한 명당 천 달러의 사용료를 요구

퍼스널 오디오(Personal Audio) - **포드캐스팅**(podcasting) 특허권 침해 주장,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8백만 달러의 배상 평결

이노바티오 아이피 벤쳐스(Innovatio IP Ventures) - **무선랜(WLAN) 기술**에 대한 특허 주장, 와이파이(Wi-Fi) 접속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슈퍼마켓, 호텔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Eolas – **interactive Internet technology** 모조리 특허 침해 주장 - 1999년 MS IE 상대로 5억 달러 배상 판결 (2012년 결국 특허 무효 판결)

- 독점 영역 회피 → 불가능
- Patent Thicket → 과다한 정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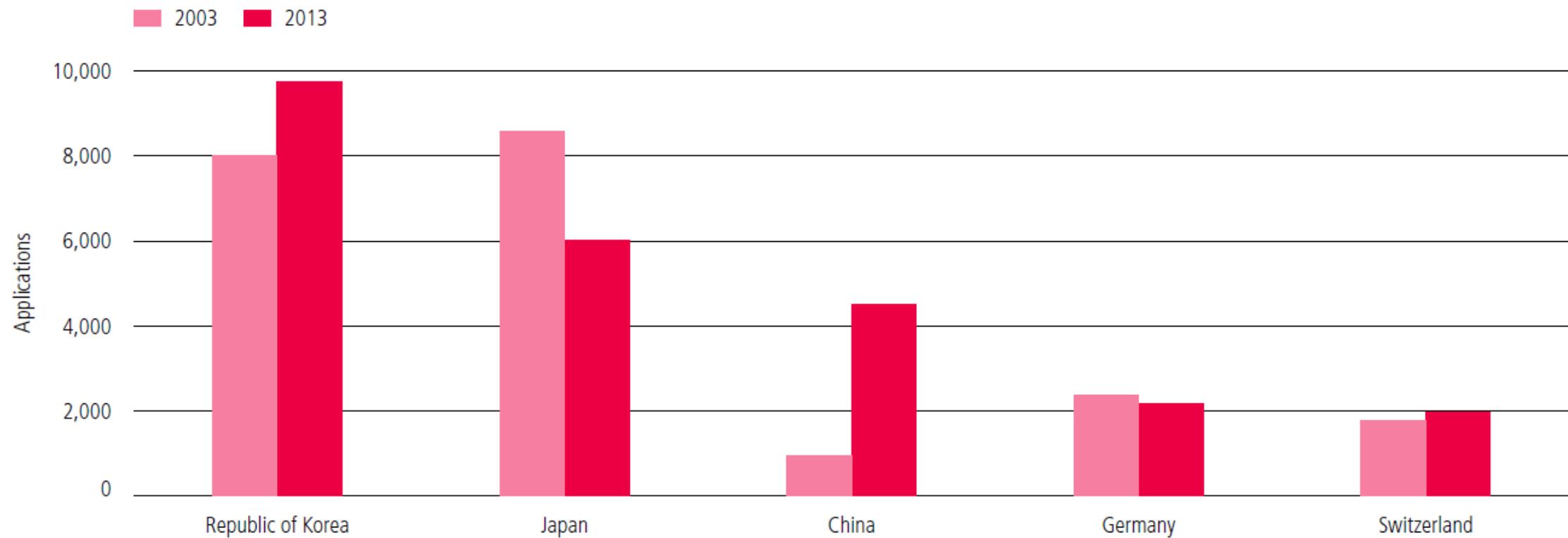
Ignoring Patent → More effic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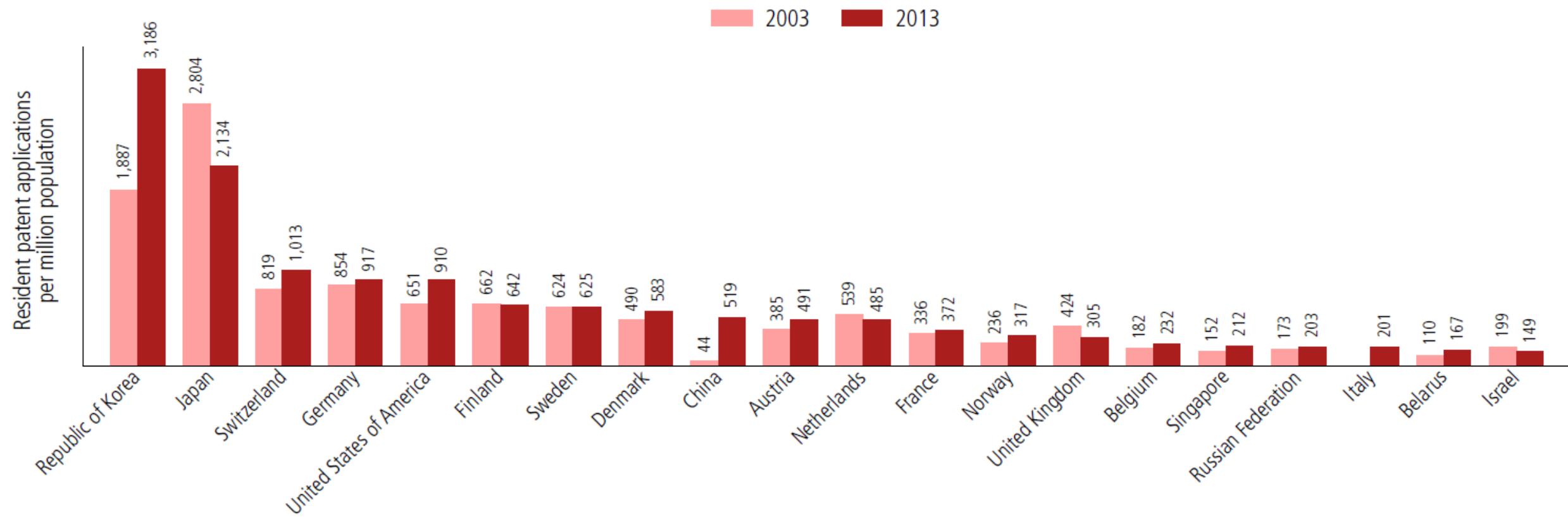
세계 4위 특허 강국  
I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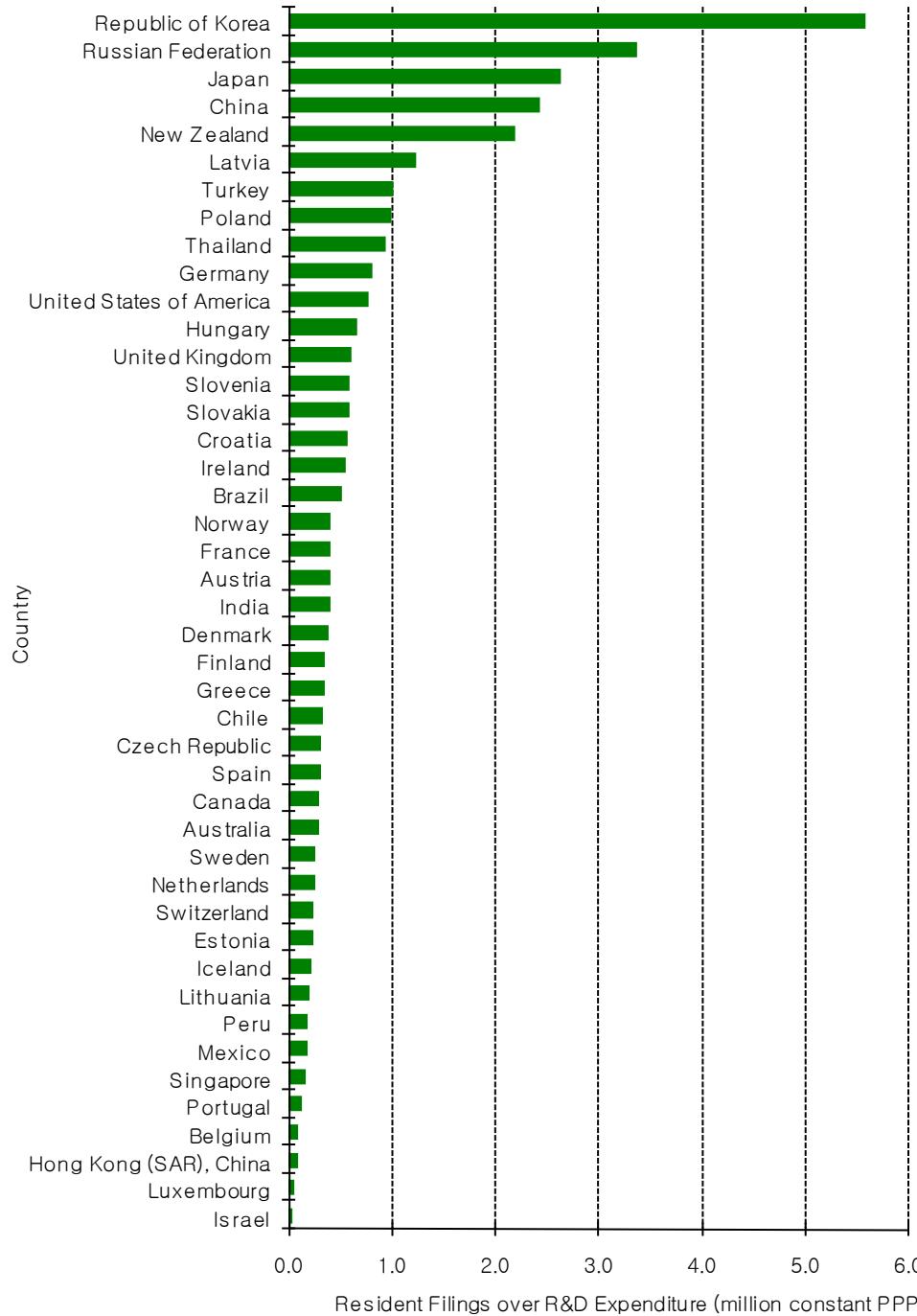
**Figure 5. Resident patent applications per 100 billion USD GDP for the top five origins**



Source: Standard figure A27.

## A28 Resident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population for the top 20 origins





## R&D 투자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2006년 기준으로 R&D  
투자비 대비 내국인의  
특허출원수

한국: 백만달러당 5.597건,  
2위 일본(2.635건)의 2.1배,  
미국(0.778건)의 7.2배,  
독일(0.816건)의 6.9배,  
영국(0.611건)의 9.2배,  
스위스(0.240건)의 23배

→ 기초 연구 소홀,  
특허출원 남발 현상

#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중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임기 2년 보장, 1회 연임 가능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고위공무원 제외)  
예산: 특별회계 → 예산의 자율성 보장

세출을 자체 세입으로 충당  
2014년 특허청 예산: 4,613억원  
수수료 수입: 4,042억원(87.6%)

# 특허청은 어떤 조직인가?

##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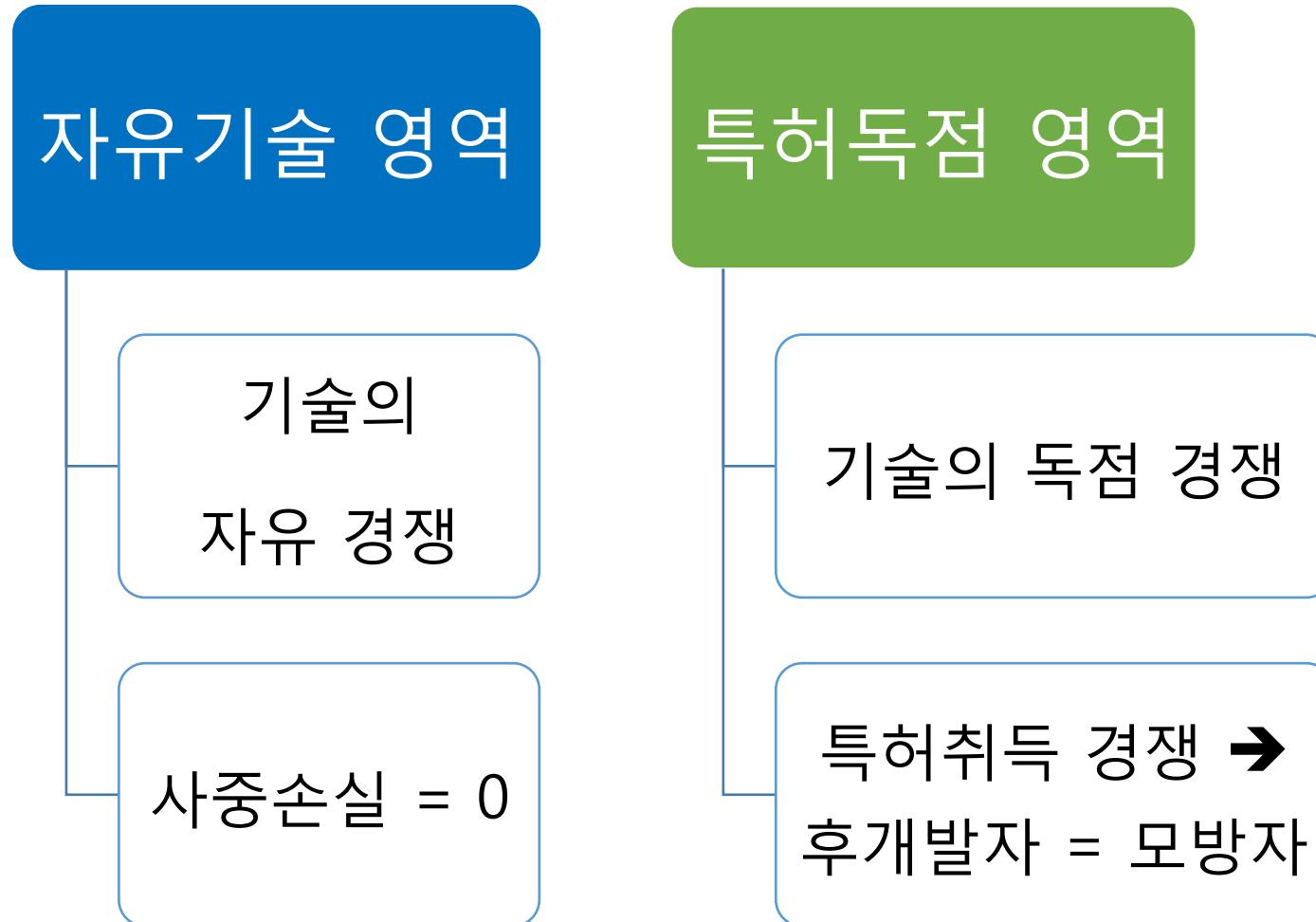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 → 출원 서류 접수, 공개, 등록 관련 업무 등.
- 심사 사무: 5개 심사국
- 심판 사무: 특허심판원

# 특허 심사 사무

## ○ 특허법 제6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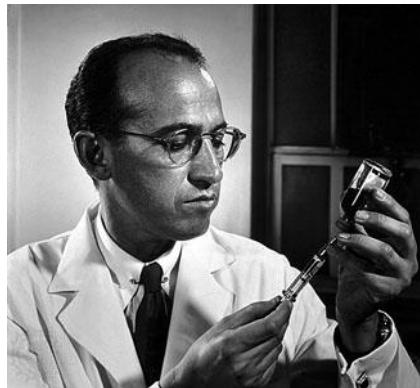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 특허권 = 특허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창설되는 제도적 권리.
- 특허 등록 요건을 특허권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의약품의 시판 허가: 안전성, 유효성을 제약사가 입증해야 함.

# 특허청의 공적 기능 (1)



# 특허청의 공적 기능(2)

## ○ Jonas Salk



소아마비 백신

"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Could you  
patent the sun?"

## ○ Benjamin Frank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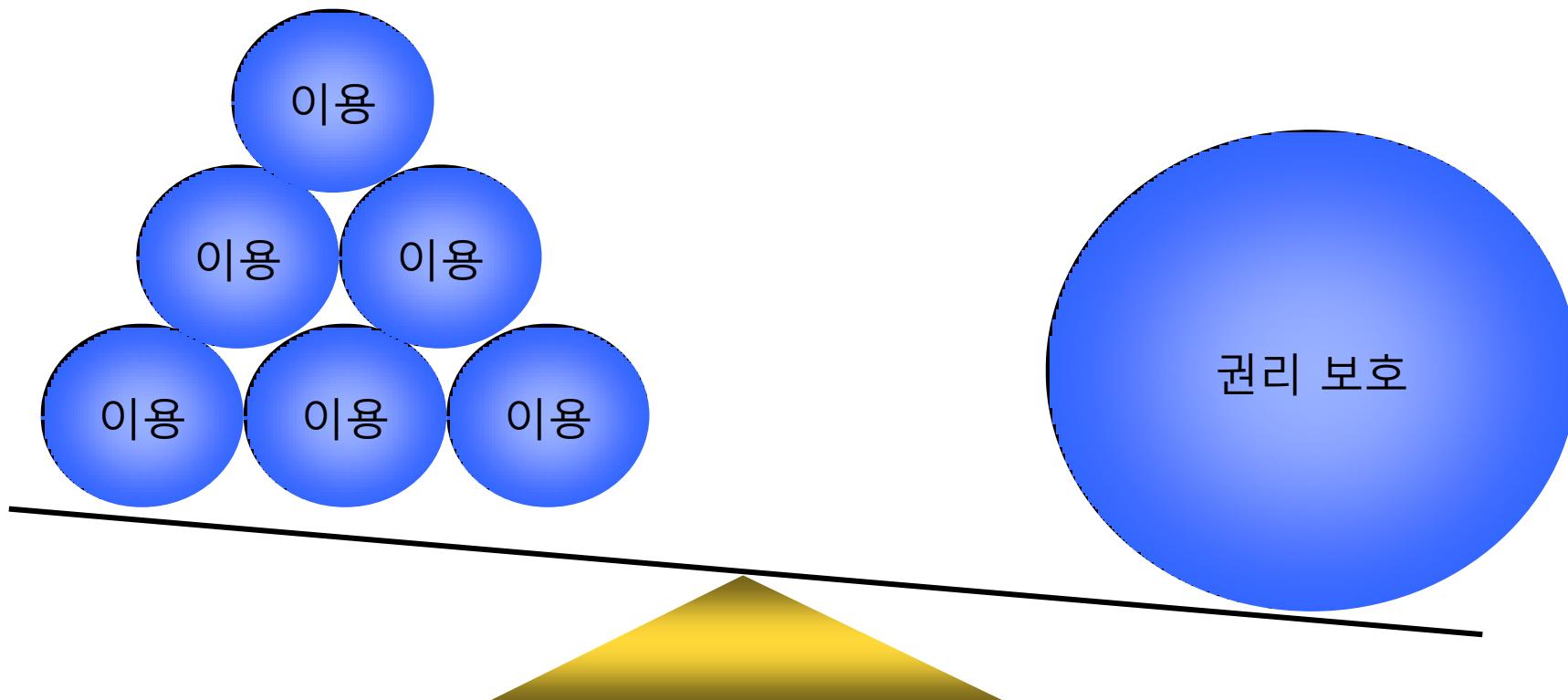
피로침, 소방차,  
벽난로

# 특허청의 공적 기능 (3)

- 특허출원인 = 기술의 독점을 추구하는 자
- 규제의 대상
- 그러나 특허청은,
  - 특허출원인 = 고객
  - 특허행정 = 서비스
-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

# 저작권 제도의 균형



# 저작권 최대주의 (1)

## ○ 권리 보호 강화

- 보호기간 연장(사후 70년)
- 새로운 권리 추가(공중송신권, 기술적 보호 조치, 일시적 저작)

## ○ 집행 강화

- 특수 OSP의 필터링 의무
- 저작권 삼진아웃제
- 민사적 구제 범위 강화
- 상설단속반
- 문화부공무원 →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

# 저작권 최대주의 (2)

## ○ 행위자

- 저작권 산업계
  - 영화, 음악, 출판, 미술, 만화, 예능,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 통상 관료
- 문화부 관료

## ○ 경로

- 대외: 다자간 협정(TRIPS, 베른협약, WCT, WPPT) + 양자간 협정(FTA) + 복수국간 협정(ACTA) + US Special 301 Report
- 대내: 저작권 산업계의 로비 + 문화부 관료의 자발적 정책 + 무기력한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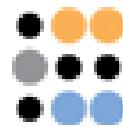
# 제도 개혁 의제

- 보상-처벌 모델의 재검토
  - 이기적 창작자 → 협력하는 창작자
- 과도한 집행의 재검토
-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재평가
- 디지털 환경
  -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저작권과 부딪히는 문제
  - 새로운 창작의 공간, 가령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모델이나 공유, 재창작(자르고 불이고 나누고) 행위와 모순되는 문제
- 창작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

신뢰할 수 있나?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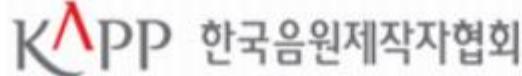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APP 한국음원제작자협회



Federation of Korea Music Performers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OREAN RADIO & TV WRITE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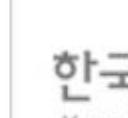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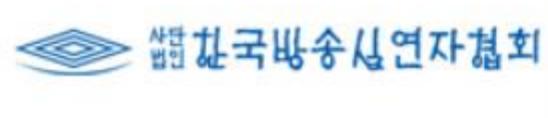
한국복사제작권협회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한국영상산업협회  
Korea Media Industry Associ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방송신연자협회  
Korea Broadcasters Association



한국영화제작가협회  
Korea Film Producers Association



KD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orea Database Agency

##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Home](#) > 정보자료



###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요약본)

발행일 : 2014.06

주요내용 : \* 2013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4.06

주요내용 : \* 2013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요약본)

발행일 : 2013.08

주요내용 : \* 2012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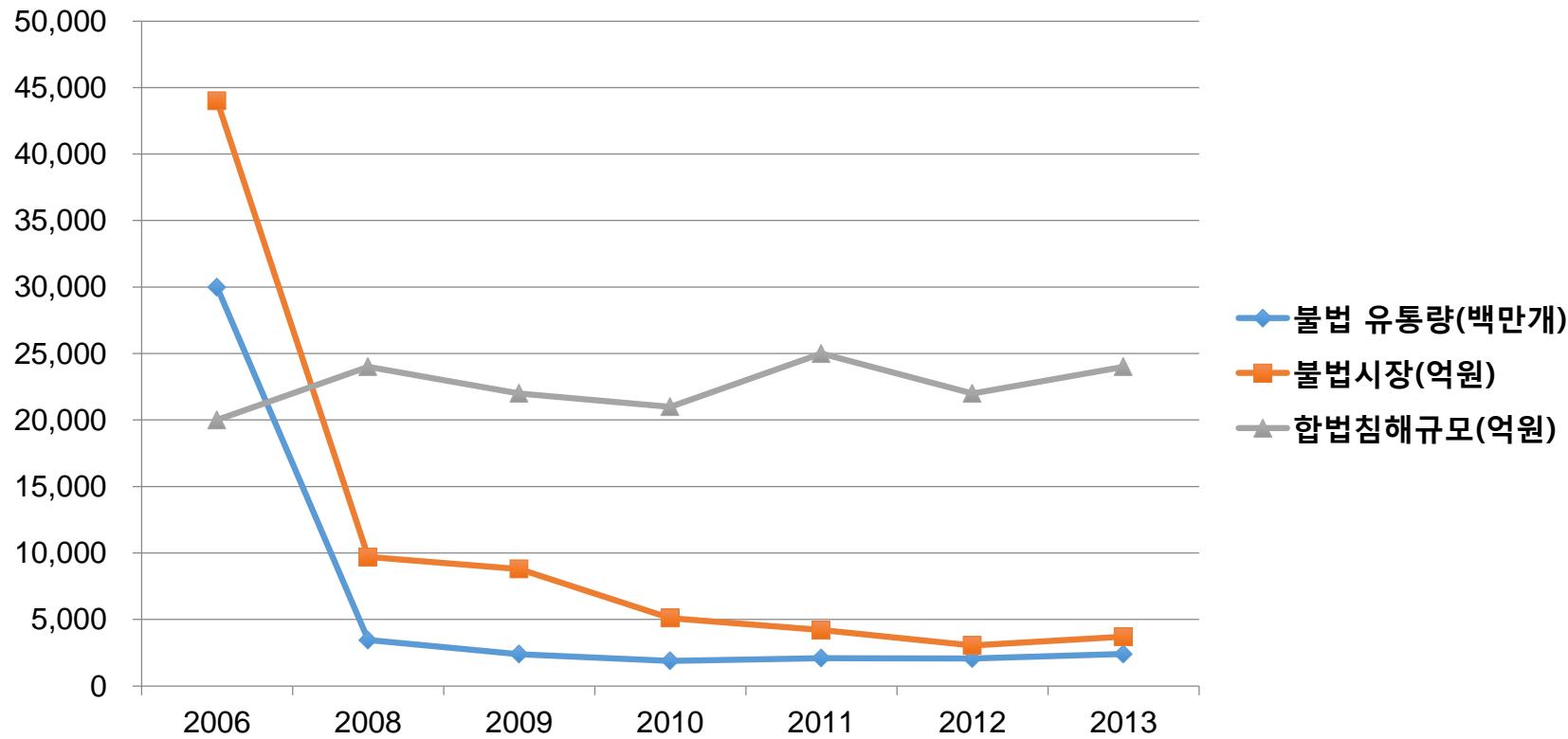


### 2013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발행일 : 2013.06

주요내용 : \* 2012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

[다운로드](#)



연도	불법 저작물 유통량(개)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원)	합법 저작물 침해 규모(원)
2013년	24억 (21억)	3천 7백억 (554억)	2조 4천억
2012년	20억 6천만 (18억)	3천 5십억 (856억)	2조 2천억
2011년	21억 (18억)	4천 2백억 (859억)	2조 5천억
2010년	18억 9천만 (16억)	5천 1백억 (1,658억)	2조 1천억
2009년	23억 9천만 (18억)	8천 8백억 (1,870억)	2조 2천억
2008년	34억 5천만 (29억)	9천 7백억 (2,536억)	2조 4천억
2007년	-	-	-
2006년	299억 8천만	4조 4천억	2조

$$\begin{aligned}
 V &= \sum_{Cv}^5 \left[ \left\{ \left( \frac{C_{ai}}{n_{ai}} \times \frac{n_{ai}}{n_{ci}} \right) \frac{n_{ci}}{n} \times NP_i \right\} + \left\{ \left( \frac{C_{bf}}{n_{bf}} \times \frac{n_{bf}}{n_{cf}} \right) \frac{n_{cf}}{n} \times NP_f \right\} \right] \\
 &= \sum_{Cv}^5 \left\{ \left( \frac{C_{ai}}{n} \times NP_i \right) + \left( \frac{C_{bf}}{n} \times NP_f \right) \right\}
 \end{aligned}$$

$V$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C_v$  :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된 콘텐츠 분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C_{ai}$  :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n_{ai}$  :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n_{ci}$  :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n$  : 조사대상자 수

$N$  : 만13 ~ 69세 전체 인구 수

$P_i$  : 온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C_{bf}$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n_{bf}$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n_{cf}$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P_f$  :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

- 전환율: 불법복제물 이용 → 합법저작물 이용
- 전국 16개 시도의 만13~69세 8,000명 대상 설문 조사(2014년 보고서)
-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비공개 : “불법복제물 사용경험이 있는가? 정품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었으나 불법복제물의 이용으로 구입하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전환율
  - 음악 69.7%
  - 영화 43.6%
  - 방송 23.4%
  - 출판 34.7%
  - 게임 48.2%
  - 전체 평균 55.6%.

# DISCUSSION